

	가정통신문	담당부서: 교무기획부 전화번호: TEL: 021) 6493-9530 FAX: 021) 6493-9600 홈페이지: http://skoschool.com
中國 上海市 閔行區 華漕鎮 聯友路 355號 (郵)201107		

2025학년도 여름방학 안내(중등)

※ 방학 안내 사항

1. 여름방학 기간: 2025.07.11.(금)~08.20.(수) (41일간) 가. 방학식 : 2025. 07. 10.(목) 2교시 수업, 10시 20분 하교차량 출발 나. 학교 오는 날 : 2025. 08. 21.(목) 정상수업	
2. 학교 연락처: 대표 전화 6493-9500 / 대표 팩스 6493-9600/ 홈페이지: www.skoschool.com 담임 선생님 전화 번호: _____ / 교무실 근무자 유선번호: 6493-9530	
3. 학교출입 통제로 인한 도서관 휴관 및 민원처리 안내 가. 여름방학 중 교내 공사로 인하여 학교 출입이 불가하며 , 도서관 개방하지 않습니다. 나. 북레일 전자도서 이용안내 : www.bookrail.co.kr 소속기관 : 상해한국학교 (아이디 : skoschool1 / 비밀번호 : skoschool1) 다. 방학 중 민원사항(제증명발급 등) 안내 담임교사→당직교사 업무처리→보안실에서 수령(단, 당일 업무처리 불가, 3일전에 연락)	
4. 국내지원형 온라인공동교육과정 수업 안내(11학년 신청자에 해당) 가. 운영과목 : 인공지능 기초, 보건, 인공지능 수학, 공학 일반, 농업생명과학, 철학, 심리학, 교육학, 실용 경제, 창의경영 나. 운영일정 : 2025. 07. 12.(토) ~ 08. 14.(목), 과목별 운영 일정이 다르므로 주의	

※ 방학 중 안전생활

교통 안전	- 오토바이, 전동차 탑승 금지, 불법운행 자가용(黑车), 3륜차 탑승 금지
불건전 행위, 사이버폭력 및 성폭력 금지	- 음주 흡연 절대 금지 , 특히 공원이나 아파트 등에서는 주민들의 민원 대상이 됨 - 상점 등에서의 절도 행위 금지 (해당 상점과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교칙에 따라 처벌) - 사이버 상 비방글, 악성댓글, 욕설 등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형태의 사이버폭력 행위,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을 적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 하는 모든 행위 금지 - 성희롱 과 친밀감을 구분하고, 대화 중 권위적이거나 성별 고정관념 이 담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며, 상대가 불쾌감을 표시하였을 경우 즉각 중지하고 사과 하도록 함
단정한 용의 복장	- 방학 기간에도 본교 학생임을 명심하고 용의복장을 단정히 해야 함 - 개학일에는 용의복장을 단정하게 하고 등교 해야 함.
긴급 상황 시 연락처	- 주상하이총영사관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86)21-6295-5000 긴급연락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시, 24시간) : (86)138-1650-9503(4)

* 학생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으로 더 안전하고 보람 있는 방학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 방학 중 한국 입국 관련 유의 사항

뒷면의 재외국민 특별전형(2% 이내) 표준화 지원 자격 안내를 참고하여 추후 지원 자격 미달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2% 이내) 표준화 지원 자격 안내

○ 재외국민 및 외국인(2% 이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

구분	내용
국외근무자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 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국외근무자의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 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 (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국외재학기간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국외체류일수 조건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 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 제출서류

※ 대학별 추가 서류는 대학자율로 결정

구분	제출서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2. 초·중·고 재학증명서 3. 초·중·고 성적증명서 또는 생활기록부 4. 가족관계증명서(학생기준) 5. 출입국사실증명서(부, 모, 학생) 6.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 모, 학생) 7. 여권 사본(부, 모, 학생) 8. 재외국민등록부 등본(부, 모, 학생) 9.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해외 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해당) 10. 해외지사설치인증서 또는 해외직접투자신고서(해외 파견 재직자 해당) 11.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현지 취업자와 자영업자 해당) 12. 해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 이력(현지 취업자 해당) 13. 자영업자의 해외 세금납부증명서(현지 자영업자 해당)
전 교과과정 이수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2. 초·중·고 재학증명서 3. 초·중·고 성적증명서 또는 생활기록부 4.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5.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학생) 6. 여권 사본(학생)

상 해 한 국 학 교 장